

반환보증 채권관리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반환보증 채권관리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직제규정 업무처리기준」 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약관사항의 내규 반영 및 관할부점 이관기준 정비 등 업무처리 개선

3.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시행세칙」의 사고관리 조항 이관
- 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생략 대상 명확화
- 다. 구상권 관할부점 이관 기준 마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4년 7월 16일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
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
- 담당자(이메일) : 박서형 대리 (2063@hf.go.kr)
- 전화번호 : 051-663-8195
- 팩스번호 : 0505-036-1943

붙임. 반환보증 채권관리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후대비표 1부. 끝.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3. 관할부점	3. 관할부점	
<u><신 설></u>	<u>나. 가.에도 불구하고 반환보증의 주 채무자가 사업자보증의 피보증인 또는 사업자보증 구상권의 주채무자인 경우 반환보증 구상권 관리는 사업자보증 잔액 또는 사업자보증 구상권 잔액을 보유한 지사등으로 이관하여 실시한다.</u>	관할부점 조정
<u><신 설></u>	<u>제2장 사고관리</u>	
<u><신 설></u>	<u>1. 사고처리</u>	
	<u>가. 반환관리규정 제8조에 따라 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이 신청 접수된 사실을 확인한 후 사고 사실을 전산에 입력하여 사고처리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u>	사고업무 이관
	<u>1) 경·공매에 따라 임차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u>	
	<u>2) 보증채권자가 임대차 목적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u>	
	<u>나. 사고사유 발생 후 주채무자가 공사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사고처리를 유보할 수 있다.</u>	약관사항을 기준에 명확히 반영
	<u>다. 사고처리 후 보증채무 이행 전 주채무자가 미반환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한 경우 사고 정상화 처리한다.</u>	

현행	개정안	비고
<u>제2장</u> 보증채무이행 <u>제3장</u> 구상권 관리 <u><신설></u>	<u>라. 사고처리 및 사고정상화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u>제3장</u> 보증채무이행 <u>제4장</u> 구상권 관리 <u>부칙(3)</u> <u>1. 시행일</u> <u>이 기준은 2024년 7월 00일부터 시행한다.</u> <u>2. 적용례</u> <u>2024년 7월 00일 이전에 취급된 반환보증에도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u>	